

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

구리시 수택동 266-2번지 일원상에 「주택법」에 따라 추진 중인 수택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, 「주택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09. .

구 리 시 장

1.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내역

가. 조 합 명 : 수택지역주택조합

나. 조합설립인가일 : 2020.05.22.

다. 변경인가 내용

구 분	내 용
조합 명칭	수택지역주택조합
사무소 소재지	구리시 이문안로 150, 경일빌딩 2층
주택건설 대지위치	수택동 266-2번지 일원
조합원 수	200명
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현황	전체 사업면적 : 12,540㎡ 확보 면적 : 12,540㎡ (100%)
변경 내용	조합원 교체(2명)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건축과(☎031-550-24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